

한국철도공사 2025년 채용제도 변경 사전예고

한국철도공사는 2025년 상반기부터 신규직원 채용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할 예정입니다.

2025년 1월 13일
한국철도공사 사장

1] 채용분야 신설

- 사무영업(역무설비) 분야 신설 : PSD, 승강기 등 역사 내 시설물 관리강화 및 비상시 능동적 대처 역량을 갖춘 직원 채용

채용직렬	채용직무	전공과목	출제범위
사무영업	일반, 수송	경영학	경영학원론, 인사관리, 생산관리, 마케팅관리 (재무관리, 회계학 미포함)
	<u>역무설비</u>	<u>경영학</u> <u>건축설비</u>	<u>경영학원론, 마케팅관리, 건축설비, 건축법규</u> (재무관리, 회계학 미포함)

- 건축(건축전기전자) 분야 신설 : 기존 '건축일반'과 '건축설비' 분야를 '건축일반' 분야로 통합하고, 건축전기전자 분야를 신설하여 PSD, 승강기 등의 기계설비 유지보수 역량 강화

채용직렬	채용직무	전공과목	출제범위
건축	<u>건축일반</u>	건축일반	건축계획, 건축구조, 건축시공, <u>건축설비</u> , 건축법규
	<u>건축전기전자</u>	<u>전기전자</u>	<u>전기자기학, 회로이론, 제어공학, 디지털응용회로, 전자회로설계, 전자회로검증</u>

② 시민 안전 및 직무 관련 자격증 가점 변경

- 안전분야 자격증 일부를 직무와 밀접한 '사무영업' 분야와 '건축' 분야 우대 자격증으로 구분하여 한 등급 상향 적용
 - (사무영업) 소방설비, 승강기, 소방시설관리사,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을 철도관련 직무 자격증으로 우대하여 한 등급 상향 적용
 - (건축) 소방설비, 승강기,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철도관련 직무 자격증으로 우대하여 한 등급 상향 적용
- 토목 분야 선로 유지보수 관련 자격증 우대
 - (토목)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철도관련 직무 자격증으로 우대하여 한 등급 상향 적용

[별표 5] 채용시험 자격증 가산점수 및 대상 자격증

(제12조제1항제3호 관련)

2. 채용직무별 가산대상 자격증

★는 철도관련 직무 자격증으로 우대하여 한 등급 상향 적용됨(完)

나. 안전

기술사	기능장	기사	산업기사	기능사
⋮	⋮	⋮	⋮	⋮
		(삭제)	(삭제)	
		(삭제)	(삭제)	(삭제)

다. 직렬별 직무

1) 사무영업

기술사	기능장	기사	산업기사	기능사
⋮	⋮	⋮	⋮	⋮
⋮	★소방설비기사 (기계/전기)	★소방설비산업기사 (기계/전기)	⋮	⋮
⋮	★승강기기사	★승강산업기사	★승강기기능사	⋮
⋮	★공조냉동기계기사	★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	★공조냉동기계기능사	⋮
⋮	★소방시설관리사	⋮	⋮	⋮

4) 토목

기술사	기능장	기사	산업기사	기능사
⋮	⋮	⋮	★굴착기운전기능사	⋮

5) 건축

기술사	기능장	기사	산업기사	기능사
⋮	★소방설비기사 (기계/전기)	★소방설비산업기사 (기계/전기)	⋮	⋮
⋮	★승강기기사	★승강산업기사	★승강기기능사	⋮
⋮	★소방시설관리사	⋮	⋮	⋮

③ 채용시험의 가산점수 등 변경

○ 사회형평적 채용대상자 필기시험 가점 확대

구 분	우대대상자	적용방식			
		서류	필기	실기	면접
취업지원 대상자 (보훈)	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	5점 또는 10점	5점 또는 10점	5점 또는 10점	5점 또는 10점
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	5점	5점	5점	5점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응시자 본인	-	3점 (신설)	-	-
북한이탈주민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“북한이탈주민”으로서, “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” 발급이 가능한 자	-	3점 (신설)	-	-
다문화가족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의 다문화 가족으로서 증명이 가능한 자	-	3점 (신설)	-	-
자립준비청년 (보호종료아동)	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“보호종료확인서” 발급이 가능한 자 단,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에 따른 ‘청년’에 한해 적용	-	3점 (신설)	-	-

- 우수 체험형 인턴(6개월 이상 수료자 중 상위 20%)의 인센티브는 서류전형 (자기소개서, 자격증, 어학 평가) 시행 시 서류전형을 면제(2년간)하고, 서류검증(자기소개서 검증) 시행 시에는 필기시험에 1점 추가 가산(2년간)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공개경쟁채용 시험의 방법) ①~② (생략) 1. 서류전형은 채용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(자기	제8조(공개경쟁채용 시험의 방법) ①~② (현행과 같음) 1. 서류전형은 채용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평가

현행	개정안
<p><u>소개서, 자격증, 어학성적 등)를 평가하여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.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배수 미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하여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또는 자기소개서 검증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.</u></p>
<p>제12조(채용시험의 가산점수 기준) ① (생략)</p> <p>4. 공사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되어 공사에서 정한 평가를 통과하고 수료한 사람 중 인턴 실습 직무와 동일한 직렬에 지원한 사람에게는 2점을 <u>가산한다.</u> 이때 가산 점수는 인턴을 수료한 날부터 2년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적용한다.</p>	<p>제12조(채용시험의 가산점수 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공사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되어 공사에서 정한 평가를 통과하고 수료한 사람 중 인턴 실습 직무와 동일한 직렬에 지원한 사람에게는 2점을 <u>가산하고, 6개월 이상 체험형 인턴을 수료하고 종합평가결과 우수 인턴(상위 20%)으로 선정된 자가 인턴 실습 직무와 동일한 직렬에 지원했을 때에는 서류전형 면제 하거나 1점을 추가 가산한다.</u> 이때 <u>가산 점수와 서류전형 면제</u>는 인턴을 수료한 날부터 2년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적용한다.</p>